

## 연대보증계약서

본 연대보증계약(서)[이하 “본 계약(서)”]은 2018년 7월 28일 아래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된다.

- (1) 채권자: 주식회사 테일리펀딩대부(이하 “채권자”)
- (2) 채무자: \_\_\_\_\_ 주식회사(이하 “채무자”)
- (3) 연대보증인: 이: \_\_\_\_\_ (이하 “연대보증인”)

### 전 문

①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\_\_\_\_\_ !에 1단지 연립주택 신축공사사업,  
②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\_\_\_\_\_ !에 2단지 연립주택 신축공사사업  
과 관련하여, 채무자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자, 연대보증인 등과  
2018년 7월 28일 대출약정금 한도 금 오십억원(W5,000,000,000)의 대출약정(서)[이하  
“대출약정(서)”라 하며, 이후 변경 또는 수정된 약정을 포함한다]을 체결하였다.

한편, 연대보증인은 대출약정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부담  
하는 피담보채무(아래에서 정의됨)를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.

이에 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.

### 제 1 조 정의

본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는 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 대출약정에서  
정의,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
## 제 2 조 연대보증채무의 내용

- (1) 연대보증인은 대출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.
  1. 채권자: 주식회사 테일리펀딩대부
  2. 채무자: 주식회사
  3. 피담보채무의 범위: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포함하여 채무자가 대출약정 기타 금융관련계약에 따라 또는 그와 관련하여 채권자에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각종 금전채무(연체이자 및 일체의 손해배상의 무, 금융관련계약의 변경, 추가 및 대체된 채무를 포함)(이하 “피담보채무”). 단,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대출약정금의 130%를 한도로 한다.
  
- (2) 연대보증인은 대출약정상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거나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상실 사유 또는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채권자가 요구하는 방법과 장소에서, 어떠한 공제나 원천징수 없이 즉시 이용 가능한 자금으로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  
- (3) 연대보증인의 본 조 기재 연대보증채무의 내용은 한정근보증에 해당함을 확인한다.
  
- (4)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·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아니한다.
  
- (5) 연대보증인은 피담보채무의 기일 도래 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태에 도달하기 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에 의한 피담보채무와의 상계, 공제 기타 사유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아니한다.
  
- (6)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본 조 기재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 받기 전까지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한다.

이 약정이 체결된 증거로서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 1부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채권자가 이 약정서 원본을, 나머지 당사자가 사본 1부씩을 각 보관하기로 하였다.

채무자:

주식회사 (법인등록번호: 220111-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

대표이사 이

연대보증인

이

주소: 서울특별시 용산구

생년월일:

※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, 아래 사항은 연대보증인일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항목	피보증채무의 금액	보증의 범위	연체이자율	보증기간
	금 2십억 원	금 2십억 원	16.50%	2018.07.28 ~ 2019.07.28

채권자

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

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, 비동 3층 비303호(문정동)

대표이사 이 해 우

